

제18차 극지법연구회

# 제39차 ATCM 논의 동향



**서원상**

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

# 우리나라 제출 문서

- 국가간 협력적인 사찰모델의 개발 제안 (ATCM, IP 102)
- 아시아극지과학포럼의 1년간 진행사항 (ATCM, IP 21)
-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위치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개축(CEP, IP 45)
-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 오수처리시설의 외래종 파리 확산 방지 및 퇴치에 관한 공동연구 제안(CEP, WP 52)

# 남극 광물자원 금지확인 결의

- 미국 등 21개국, 남극 광물자원활동 금지원칙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소개(한국 공동발의 참여)
  - ▶ 일반 대중의 오해 : 남극환경보호의정서(이하 의정서) 제7조(남극 광물활동금지)가 2048년에 자동 폐기, 따라서 광물활동기대...
  - ▶ 의정서 제25조(수정 및 개정) 제2항 : 발효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후 어느 협의당사국이라도 동 의정서 운영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▶ 의정서 제25조 제5항 (a)호 : 남극광물자원활동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체제가 발효하지 아니하는 한, 제7조에 규정된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금지는 지속된다.
- 러시아 "광물자원활동 금지 확인 결의"에는 컨센서스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... (적극적 반대 X)
- 새로운 합의도출이 아닌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, 의정서 제7조의 취지와 당사국 준수인지 재확인

# [Q] 남극조약체제에 관한 오해

- 우리나라도 과학기지를 근거로 추후에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. 다만, 2개 이상의 과학기지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.
- 남극은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이다.
- 2048년 이후에는 남극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.



# 새로운 사찰모델 개발 제안

- **현행 사찰 관행 (문제점)**
  - 사찰의 시행이 몇몇 국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짐
  -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한정된 지역에 반복·국한됨 (킹조지섬)
- **다수 당사국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협력적 사찰모델 개발 제안 (IP)**
  - 네덜란드, 프랑스, 뉴질랜드, 영국, 러시아, 아르헨티나, 호주 등 다수국가와 남극환경보호연합(ASOC) 등 비정부간 기구 환영
  - 프랑스 :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WP로 제출 했어야지...
  - 미국 : 사찰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수행할 지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이 결정할 문제(주권 침해...?)
- **네덜란드의 회기간 협의그룹(ICG) 제안**
  - 한국, 네덜란드, **미국** 공동의장으로 ICG 운영 결정

# [Q] 주권, 사찰 관련 자기결정권

- 협력적 사찰모델 개발은 주권 침해인가?
- 사찰의 핵심은 '비무장, 비핵화' or 남극환경보호...?



# 의정서 25주년 기념 심포지엄

## ● 의정서의 가치

- ▶ 글로벌·지역 환경협약의 모델이 되는 이정표
- ▶ 남극조약체제의 관심사는 안보 → 자원규제 → 환경보호로 이전, 현재 의정서는 남극조약체제의 중심
- ▶ 남극광물자원활동 금지는 옳은 결정이며, 또한 자부심

## ● 우리가 남극대륙을 물려받은 상태 그대로 보전하여 후속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

## ● 의정서의 이행이야말로 남극을 '평화와 과학을 위한 보존지역'으로 유지하기 위한 근간

# 남극조약협의를 당사국 자격 재고

- 베네주엘라 협의당사국 지위 신청 : 논의 X
- ICG(공동의장 : 칠레, 우루과이, 뉴질랜드)를 구성하여, 협의당사국 지위 획득 절차 및 협의당사국 지위와 관련된 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
- 관련 조항
  - ▶ 조약 제9조 제1항 :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정보를 교환하고, 남극 지역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,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, 심의하고, 각자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... 회합한다.
  - ▶ 조약 제9조 제2항 : ...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 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적 연구활동을 행함으로써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하는 동안,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.

# 수면 아래의 법률 이슈

- 제6부속서

- 미국, 러시아 2015년 비준 실패...
- 현재 12개국 비준 : 핀란드, 페루, 폴란드, 스페인, 스웨덴, 영국, 이탈리아, 뉴질랜드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남아공, 호주

- 생물자원탐사(Bio-prospecting)

- 벨기에 : 이 사안은 국제연합 등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바, ATCM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...

# 관광 및 무허가 남극활동

## ● 관광 증가에 대한 우려

- ✓ 남극관광의 공동비전 발굴 및 다년도 사업계획 제안(ICG/뉴질)
- ✓ 과학자보다 5배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및 안전 우려
- 각국의 국가프로그램에 의한 남극관광 관리와 정보공유 필요

극지연구소

## ● 무허가 남극활동

- ✓ 당사국은 자국민의 남극활동에 앞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
- ✓ 다른 국가의 남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, 위반자 파악 곤란하여 기소 등 실질적인 조치 취할 수 없어
- ✓ 각국 권한당국의 정보공유를 위하여 남극조약사무국 홈페이지에 권한당국간 토론 포럼을 만들자(노르웨이, IAATO)

# [Q] 요트 관련 문제

- 독일선박 Infinity호가 사전통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남극활동 요건을 생략한 채 캐나다, 프랑스, 미국, 영국, 독일, 호주, 스웨덴, 이탈리아 등 16명의 다국적 승객을 태우고 ASPA 159 수역 항행
  - 사찰을 하고픈데, 요트가 선박(Vessel)인가? 선박의 개념은?
- 관광의 허가
  - 관광프로그램 운영자의 허가로 족한가? or 여행객 개개인의 허가가 필요한가?
  - ✓ 포럼쇼핑 가능한가? 그 경우 남극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는?

감사합니다.

